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11.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며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3조)
 - 지급일 기준 구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자 단, 국가보훈처장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보상금 또는 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
- 지원사업(안 제4조)
 -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 기타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 증진 사업
- 지급방법 및 시기(안 제5조)
 - 참전명예수당은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매분기별 계좌입금
 -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의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급대상자의 결정(안 제6조)
 - 매년 1/4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통보
 - 지급 부적격자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단체장에게 확인의뢰

3. 조례 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관련법령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한 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구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자

제4조(지원사업)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3.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 분기 다음달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매년 1/4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						
	주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 망 일 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참전유공자와의관계		지 급 기 관 (예 금 계 좌)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관 련 법 령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6, 2005.3.31, 2007.1.3>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4조 (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1.26>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